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21 민사부

판 결

사 건 2020가합560034 사해행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현

담당변호사 강창우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김병주

변 론 종 결 2021. 4. 8.

판 결 선 고 2021. 4. 22.

주 문

1. 피고와 의료법인 C의료재단(주사무소 소재지 : 청주시 청원구 D) 사이에 2017. 5. 1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신탁계약을 227,486,78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27,486,781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의료재단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1년 3월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E이 C의료재단 병원 신축공사에 사용할 건설자재를 원고가 임대하기로 하는 건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C의료재단은 E의 원고에 대한 위 임대차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가 E에 건설자재를 임대하였으나 E은 건설자재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4. 11. 연대보증인인 C의료재단을 상대로 건설자재 임대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2013가합7625호)를 제기하여 2013. 9. 17. 위 법원으로부터 'C의료재단은 원고에게 138,8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8.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0. 15.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3) 원고는 2013. 9. 17. C의료재단으로부터 50,000,000원을 변제받아 이를 이 사건 채권의 원금에 충당하였다.

나. C의료재단과 피고 사이의 신탁계약 체결

C의료재단은 2017. 5. 18. 피고로부터 4,100,000,000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으로부터 100,000,000원을 각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F을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피고 증서 발행금액 : 4,920,000,000원, F 증서발행금액 : 120,000,000원)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등기 및 근저당권부질권 설정등기의 말소

1)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청주지방법원 2017. 2. 6. 접수 제11521호로 채권최고액 4,500,000,000원, 채무자 C의료재단,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및 같은 법원 2017. 4. 11. 접수 제40937호로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 채무자 C의료재단, 근저당권자 G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이하 위 두 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2) 또한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 위 첫 번째 근저당권에 관하여 4건의 근저당권부질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질권'이라 한다) 설정등기 또한 마쳐져 있었다.

3) C의료재단은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일 당일 피고 및 F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중 3,360,000,000원을 G에 대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같은 날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 및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질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이전에 원고의 C의료재단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이 발생하여 현재까지도 그중 원금 일부만 변제된 채로 존속하고 있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나. C의료재단의 무자력

갑 제1 내지 21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일인 2017. 5. 18. 기준으로 C의료재단의 적극재산은 7,130,042,500원(=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 7,019,060,500원 + 청주시 청원구 H, I, J, K 토지 가액 110,982,000원)이었던 반면, 소극재산은 아래 표와 같이 위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8,953,676,460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번호	내용	금액(원)
1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	158,389,192 ¹⁾
2	L에 대한 대여금 채무	322,088,054
3	M에 대한 양수금 채무	270,000,000
4	G에 대한 대출금 채무	3,360,000,000
5	(주)N에 대한 채무	1,954,045,789
6	O(주)에 대한 채무	197,000,000
7	(주)P 및 (주)Q에 대한 공사비 채무	1,040,000,000
8	R에 대한 대여금 채무	1,652,153,425
합계		8,953,676,460

다. 사해행위의 성립

1) 원금 88,805,000원 + 2013. 6. 18.부터 2017. 5. 18.까지 연 20% 이자 69,584,192원

1)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C의료재단이 피고 및 F으로부터 신규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신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행위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비록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 추진의 의도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그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등 참조),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새로운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그를 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빌려 그 자금의 전부 또는 대부분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도, 그 실질은 신규자금의 유입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 목적의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그 신탁행위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3428 판결 참조).

3) 갑 제1 내지 22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탁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료재단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된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C의료재단이 보유하고 있던 전체 부동산 가액의 약 98%(=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7,019,060,500원/전체 부동산의 가액 7,130,042,500원 × 100)

에 이른다.

나) C의료재단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및 F으로부터 대출받은 4,200,000,000원 중 3,360,000,000원을 G에 대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나머지 840,000,000원도 대부분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 결국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피담보채무 원금액을 42억 원으로 하는 부동산 담보신탁의 존재는, 원고 등 C의료재단의 다른 채권자들로 하여금 채권만족에 있어서 기존보다 더 악화된 상황에 처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라. 손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1)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책임재산으로서의 가액은 그 가액인 7,019,060,500원에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3,360,000,000원을 공제한 3,659,060,500원이다.

2)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1. 4. 8. 기준으로 이 사건 채권의 잔존 원리금은 227,486,781원(= 원금 88,805,000원 + 2013. 6. 18.부터 2021. 4. 8.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38,681,781원)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은 227,486,78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27,486,78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민성

 판사 정경희

 판사 송지현

별지

목 록

1. 청주시 청원구 D 대 1,807m²

2. 청주시 청원구 S 대 46m²

3. 청주시 청원구 T 대 2,054m²

4. 청주시 청원구 U 대 10m²

5. 청주시 청원구 D, S, T, U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평슬래브지붕 5층 의료시설

지1층 1,772.25m²

1층 741.98m²

2층 742.33m²

3층 750.38m²

4층 750.38m²

5층 636.37m². 끝.